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정책복지위원회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415호
----------	-------

2016. 7. 20.(수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6년 6월 30일

다. 상정일자 : 2016년 7월 13일

-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서승우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접하여,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유통시장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,
-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을 규정한 상위법령이 폐지·신설되어 관계법령을 현행화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조정(안 제6조제2항)

- 종전) 연 2.0% 복리  
개정)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연복리로 정함.
- 관계법령 현행화(안 제8조의 별표 2 제2호라목)
  - 종전) 「농어촌특별조치법」 제2조  
개정)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제1호, 제2호  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제2호,  
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, 제3호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- 본 개정조례안은 기준금리 및 채권유통시장 상황 변동에 신속한 대응과 채권의 원활한 매출 및 유통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(이하 “공채”라 함) 발행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조정하는 등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 하려는 것임.

※ 지방공기업법 제19조

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

-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,
  -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공채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적용하도록 하였음.  
(현행) 공채의 발행이율은 연 2.0퍼센트 복리  
(변경) 공채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연복리
  - 안 [별표 2]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및 내용 중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과 농·임·어업의 범위 근거 법률명을 변경함.

(현행)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조

(변경)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·제2호,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·제2호,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

○ 안 제6조제2항의 개정과 관련해 검토해 보면,

- 현재 공채의 발행이율은, 기존 조례에 따라 연 2.0% 복리로 하되, 다만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에 따라 연 1.5% 복리로 운영되고 있음.

- 최근 기준금리 동향 및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예견되는 바, 지자체의 발행이율이 유통금리를 상회하여 공채 발행 및 시장유통에 차질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.

- 따라서, 공채의 발행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르도록 조정하려는 것은 경제상황 및 공채시장상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여 원활한 공채 발행 및 건전한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※ 2016년 6월 9일자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1.25%로 인하됨.

○ 안 [별표 2]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및 내용 중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과 농·임·어업의 범위 근거 법률을 변경 한 것은 「농어촌특별조치법」의 2009년 5월27일 폐지에 따른 것으로, 매입면제대상 근거법률을 변경한 것으로 타당함.

<참고자료>

□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

연월일	2014 08월 14일	2014 10월 15일	2015 03월 12일	2015 06월 11일	2016 06월 09일
기준금리(%)	2.25	2.00	1.75	1.50	1.25

※ 한국은행 홈페이지 [www.bok.or.kr](http://www.bok.or.kr) 에서 발췌

□ 지역개발채권(공채) 연도별 발행 현황

(단위 : 억원)

연 도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.6
발행액	1,156	1,127	1,248	1,348	1,552	668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##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지역개발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” 를 “지역개발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” 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연 2.0% 복리로 한다” 를 “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연 복리로 정한다” 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라목 중 “「농어촌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의한다” 를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·제2호, 「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·제2호,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다” 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」(이하 “특별회계” 라 한다)를 설치 운영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-----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공채의 발행이율은 <u>연 2.0%</u> 복리로 한다.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	<p>제6조(공채의 발행기간 및 이율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연복리로 정한다.</u>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



현 행		개 정 안	
<p>[별표 2]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〈제8조 관련〉</p>		<p>[별표 2]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〈제8조 관련〉</p>	
구분	면제대상 및 내용	구분	면제대상 및 내용
1.기관 단체	가.~차.(생략)	1.기관 단체	가.~차.(현행과 같음)
2.사업 행위	<p>가.~다.(생략)</p> <p>라.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의 농어가주택건축 및 농·임·어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(단,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과 농·임·어업의 범위는 「농어촌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의한다)</p> <p>마.~타.(생략)</p>	<p>2.사업 행위</p> <p>가.~다.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·제2호,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·제2호,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다)</p> <p>마.~타.(현행과 같음)</p>	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공기업법

제19조(지방채 등) ① ~ ② <생략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
2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(出捐)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

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”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농업인”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3.~11. <생략>

### □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<생략>

가. 어업: 수산동식물을 포획(捕獲)·채취(採取)하거나 양식하는 산업,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

나.~라. <생략>

2. <생략>

3. “어업인”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4.~9. <생략>

## 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임업”이란 영림업(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과 「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·운영을 포함한다), 임산물생산업, 임산물유통·가공업,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.

2. “임업인”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
3.~8. <생략>